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9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  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“교육감이 위촉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“위촉”하는 것이 아니라 “임명”하여야 하며,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,  
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 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 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 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 으로 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 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 <신설>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<u>위촉</u>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 1. ~ 4.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<u>임명 · 위촉</u>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 1. ~ 4.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치구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, “서울미래교육지구”를 “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(이하 “미래교육지구”)"를  
“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(이하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)"로, “미래교  
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미래교육지구”  
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  
로, “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” 을  
“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  
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”을 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”를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

사업의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
2.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
3.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·청소년 지원

제5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)”을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“를”을 “와 협약을 체결하여”로, 같은 조 제2항 “2”를 “1”로, “지정 2년차에는 종합”을 “매년”으로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4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을 “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”으로, “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”로, “해지 할”을 “해지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)”을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및 단계별 추진 계획”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“지도·점검”을 “지원 체계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서울교육

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민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과장”을 “장학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
3.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
4. 그 밖에 교육협력특구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사회 및 교육 전문가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”를 “교육 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”로, “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와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”로, “자치구별 계획”을

“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대학 및 기업 등”을 “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교육청     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교육청     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<u>자치구</u>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<u>서울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서울미래교육지구”</u> (이하 “<u>미래교육지구</u>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“<u>교육감</u>”이라 한다)이 <u>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</p> <p>2. <u>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</u> 이란 교육감이 <u>미래교육지구</u>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<u>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</u>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 <u>지방자치단체</u>----- 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.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”</u> (이하 “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”-----) ----- 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사업을 ----- -----.</p> <p>2. <u>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</u> ----- 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----- ----- <u>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 역</u></p>

	<p><u>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</u>  <u>---.</u></p> 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 ----- <u>기반을 조성하기 위해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 -----.</p> <p>제4조(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</u>)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</u></p> <p>2. <u>어린이 · 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</u></p> <p>3. <u>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 · 청소년 지원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----- <u>교육감</u>-----</p> <p>제5조(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</u></p>

등)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③ (생 략)

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.

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·지원할 수 있으며,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및 운영) ①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  
-----와 협약을 체결하여-----  
-----.

②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1-----  
----- 매년 -----  
-----.

###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## ⑤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사업 -----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운영위원회 ----- 회----- 해지 할 ----- .

⑥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제6조(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

## 제6조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)

립)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1.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

## 2.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### 3. 미래교육지구 지정 · 평가 및 지도 · 점검에 관한 사항

#### 4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 한 사항

제7조(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# 1.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
## 2.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
### 3.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수립) ①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(2) \_\_\_\_\_  
\_\_\_\_\_.

## 1.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----- -----.

## 2. 교육 협력 특화지구

### 3.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지원 체계-----

#### 4.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

제7조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 
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  
----- -----  
----- ----- 교육협력특화  
----- -----  
----- ----- 지구 -----  
----- -----  
----- -----.

## 1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-----

## 2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---

### 3. 교육 협력 특화지구

<p>4. <u>미래교육지구</u>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</p> <p>5. 그 밖에 <u>미래교육지구</u>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<u>②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</p> <p>2.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</p> <p>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</p>	<p>4.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</p> <p>5.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----- -----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</u>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.</p>
<p>4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</p> <p>〈신 설〉</p>	<p><u>③</u>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</p> <p>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</p> <p>3.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</p> <p>4.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과</p>

	<p><u>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</u></p> <p><u>④ 위원-----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<u>⑤ -----</u> ----- 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<u>장학</u> <u>관 또는 사무관-----.</u></p> <p>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</p> <p>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0조(행정적 · 재정적 지원) ① -----</p>
--	--

<p>은 <u>미래교육지구</u>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<u>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감은 <u>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</u>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, <u>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</u>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<u>자치구별 계획</u>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1조(대외협력) 교육감은 <u>미래교육지구</u>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<u>대학 및 기업 등</u>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부칙 &lt;제8832호, 2023.7.26.&gt;</p>	<p>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</u> -----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</u> -----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대외협력)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-----<u>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</u>----- -----.</p> <p>제12조(현행과 같음)</p>
--	---